

大韓帝國期 경상남도 機長郡의 가옥 분포와 규모

- 1904년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慶尙南道機長郡家戶案)>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

장 경 준*

| 목 차 |

- I. 머리말
- II. 가옥 분포
- III. 가옥 소유주
- IV. 가옥 형태와 규모
- V. 맺음말

| 국문초록 |

1904년 기장의 행정구역은 8면, 88동리로 구성되었다. 가옥은 총 2,100채가 있었으며 이 중 동면, 3북면(상북면, 중북면, 하북면), 읍내면에 많은 수가 분포했다. 가옥 형태와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옥은 가대주 가옥(1,920채)과 자주 가옥(180채)으로 구분되었다. 전체 가옥 2,100채 중 2,093채는 초가, 7채는 와가였다. 와가는 주로 상서면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상서면이 유력 향반 가문들이 자리 잡고 동성 촌락을 형성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인근 동래와 비교할 때, 기장의 읍세는 열세였다. 1899년 동래의 호구는 6,728호, 27,275명으로, 기장은 호는 3.7배, 인구는 2.9배가 적었다. 1910년도 동래의 호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교육실장 / kjang21@hanmail.net

구는 13,960호, 69,460명으로, 기장은 호와 인구가 모두 3.5배나 적었다. 소속 면의 수도 동래는 12면, 기장은 8명으로 동래보다 4면이 적었다. 대지의 규모도 동래는 한 필지에 여러 채의 가옥이 들어선 예가 있었던 데 비해 기장은 그런 예가 없어 규모가 큰 대지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기장과 동래 모두 3칸 규모의 초가가 대부분이었고, 가대주 가옥이 가주 가옥보다 많았다는 점은 같았다. 또 해안가에 가옥이 많다는 점도 유사했다.

주제어: 가호안, 대지, 가옥, 대주(堡主), 가주(家主), 초가, 와가.

I. 머리말

기장(機張)은 오랜 기간 역사 변천을 겪었다. 그만큼 기장을 주제로 한 연구도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기장 역사를 종합 정리한 연구가 있고¹⁾,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지방제도 정비와 연관해 기장의 역사 변천을 살핀 연구도 있다.²⁾ 조선시대 기장에 관해서는 삼정(三政) 운영 실태를 밝힌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도자기 생산과 사기장(沙器匠), 시장권(市場圈), 면리제(面里制), 수령(守令) 재임 양상 등에 관한 연구 등도 이루어졌다.³⁾ 또 2024년 상반기까지도 기장 출토 고려기와 명문 연구, 기장 효암리 전복 바위 관련 자료 소개, 심노숭(沈魯崇, 1762~1837)의 기

1) 기장문화원, 『기장의 역사와 문화』, 신서원, 1998.

2) 정용숙, 「신라·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정비와 기장」, 『한국민족문화』 8, 1996.

3) 윤용출, 「조선후기 機張縣의 三政 운영」, 『한국민족문화』 8, 1996; 이종봉,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33, 2009; 변광석, 「임진왜란 직후 기장 지역의 상황과 피로인 사기장」, 『한국민족문화』 33, 2009; 김동철, 「18세기 후반~20세기 전반 기장 지역의 시장권」,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2010; 이종봉, 「조선후기 機張縣의 面里制」, 『역사와 세계』 54, 2018; 김혜리, 「조선후기 기장현감의 재임양상과 그 의미」, 『역사와 세계』 64, 2023. 이외 기장 지역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손승경, 「주변부에서 배후지로-기장의 역사와 문화, 무엇을 문제 삼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동양한문화연구』 44, 2016 참조.

장 유배 일기인 『남천일록(南遷日錄)』을 활용한 일련의 연구 등이 제출되어 있다.⁴⁾

그동안 거둔 연구 성과로 기장의 행정, 경제, 사회, 교육, 관방, 교통 등 제 분야의 기초 지식이 적지 않게 축적됐다. 하지만 기장에 터를 잡고 삶을 일궈 온 거주민의 기초적인 모습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아 아쉽다. 물론 자료 제약에 따른 결과이겠으나, 기장이 인근 동래(부산), 울산, 양산에 비해 읍세(邑勢)가 미약한 잔읍(殘邑)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연구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탓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장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자 20세기 초 기장에 가옥이 얼마나 분포했고, 규모는 어떠한지 고구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 경상남도의 가옥 사정은 이미 최영준이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당시의 주거 사정을 대략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는 경상남도 소속 군(郡)을 단위로 분석해 각 군의 주거 사정을 비교하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면(面) 이하 사정까지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⁵⁾ 이 점에 유의하여 이 글은 기장에 집중해 면 이하 동리(洞里)까지의 주거 사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기장의 면 단위는 물론 각 동리 단위까지의 주거 환경(가옥 분포, 소유와 형태·규모 등)에 관한 기초 정보를 추출하고, 그 특성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 연구에서 진행했던 동래의 결과와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확인해

4) 구산우, 「부산 기장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 『항도부』 47, 2024; 홍영의, 「부산지역 고려 유적 출토 명문 기와의 성격」, 『항도부산』 47, 2024; 김동철, 「기장 효암리 전복바위와 관련 자료들」, 『항도부산』 47, 2024; 김숙경, 「『남천일록』을 통해 본 심노승과 기장의 유배인」, 『지역과 역사』 54, 2024; 이기봉, 「『남천일록』과 기장현의 유배행정」, 『지역과 역사』 54, 2024; 여민주, 「유배생활 속 공부와 소통」 『남천일』을 통해 본 유배인과 지역민의 교류」, 『지역과 역사』 54, 2024; 신세완, 「1801~1806년 심노승의 유배 생활에서 奴僕의 역할」, 『지역과 역사』 54, 2024.

5) 최영준, 「『家戶案』 분석을 통해 본 개화기 경상남도의 가옥 형태와 구조」, 『대한지리학회지』 39(3), 2004.

볼 수 있을 것이다.⁶⁾ 당시 기장과 동래의 주거 사정은 매우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장과 동래의 읍세는 현격했으므로 차이가 전혀 없지도 않았을 것이다,⁷⁾ 기장과 동래가 보여주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현재는 부산광역시역에 있는 두 지역이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어떻게 주거 환경을 변화시켰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를 예고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Ⅱ. 가옥 분포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 기장의 가옥수와 동리별 분포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분석할 자료는 1904년에 작성한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이하 <기장 가호안>으로 약칭함)이다.

<가호안>의 성격과 한계는 이미 전고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바 있어 이 글에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⁸⁾ 다만, <가호안>이 ①가옥이 선 가좌(垞地)와 그 가옥을 소유한 자(家垞主), ②가좌는 소유하지 않고 가옥만을 소유한 자(家主)만, 즉 가옥 소유주만 파악한 장부라는 점은 강조

6) 필자는 이 글에 앞서 대한제국기 동래군의 주거지 분포와 가옥 소유 현황을 다룬 바 있다. 그 결과 동래군의 전통적 주거지와 그동안 주거지로 선호하지 않았던 해안지를 개항 이후 새로운 주거지로 인식하면서 가옥이 증가하는 모습과 대지와 가옥의 소유자, 규모, 형태 등을 면별로 살펴 개항 이후 인구 증가 추세 속에 주거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장경준, 『대한제국기 경상남도 동래군의 주거지 분포와 가옥 소유 현황 -1904년 <경상남도 동래군 가호안>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향도부산』 43, 2022).

7) 참고로 근대 이전 전통 시기에 기장과 동래는 비슷한 모습 외에 다른 모습도 보였다. 일례로 조선 후기 기장과 동래는 국가 정책에 맞춰 3년마다 호적을 成籍했으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호구문서(호구단자나 준호구)를 간소화하는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었다(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상과 ‘호’의 성격-경상도 지역 사례』,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44~152쪽 참조).

8) 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63~368쪽 참조.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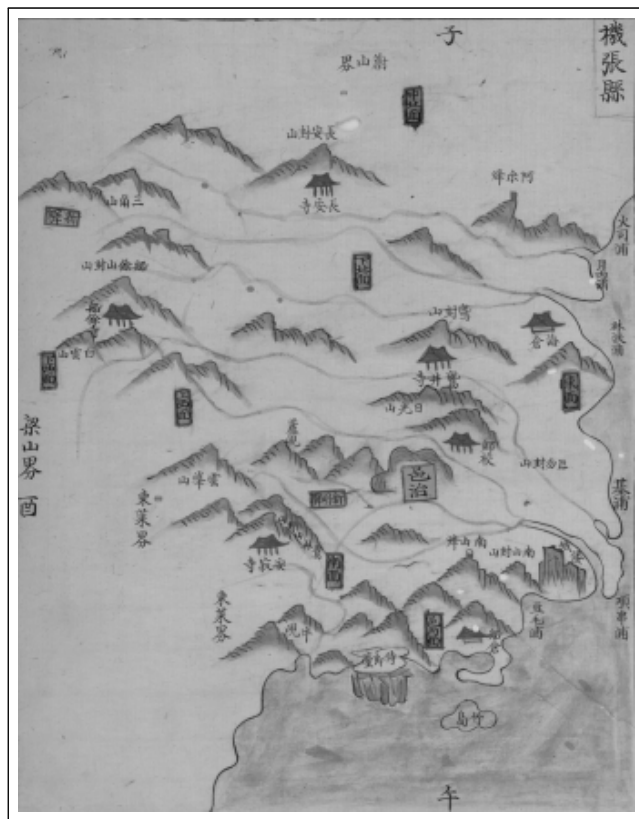
〈그림 1〉 『경상남도기장군가호안』

姓字 <table> <tr><td>第百一十一號</td><td>第百一十二號</td><td>第百一十三號</td><td>第百一十四號</td><td>第百一十五號</td><td>第百一十六號</td><td>第百一十七號</td><td>第百一十八號</td><td>第百一十九號</td><td>第百二十號</td></tr> <tr><td>第百二十一號</td><td>第百二十二號</td><td>第百二十三號</td><td>第百二十四號</td><td>第百二十五號</td><td>第百二十六號</td><td>第百二十七號</td><td>第百二十八號</td><td>第百二十九號</td><td>第百三十號</td></tr> <tr><td>第百四十一號</td><td>第百四十二號</td><td>第百四十三號</td><td>第百四十四號</td><td>第百四十五號</td><td>第百四十六號</td><td>第百四十七號</td><td>第百四十八號</td><td>第百四十九號</td><td>第百五十號</td></tr> <tr><td>第百六十一號</td><td>第百六十二號</td><td>第百六十三號</td><td>第百六十四號</td><td>第百六十五號</td><td>第百六十六號</td><td>第百六十七號</td><td>第百六十八號</td><td>第百六十九號</td><td>第百七十號</td></tr> <tr><td>第百八十一號</td><td>第百八十二號</td><td>第百八十三號</td><td>第百八十四號</td><td>第百八十五號</td><td>第百八十六號</td><td>第百八十七號</td><td>第百八十八號</td><td>第百八十九號</td><td>第百九十號</td></tr> <tr><td>第百九十一號</td><td>第百九十二號</td><td>第百九十三號</td><td>第百九十四號</td><td>第百九十五號</td><td>第百九十六號</td><td>第百九十七號</td><td>第百九十八號</td><td>第百九十九號</td><td>第百一百號</td></tr> </table> 五十一	第百一十一號	第百一十二號	第百一十三號	第百一十四號	第百一十五號	第百一十六號	第百一十七號	第百一十八號	第百一十九號	第百二十號	第百二十一號	第百二十二號	第百二十三號	第百二十四號	第百二十五號	第百二十六號	第百二十七號	第百二十八號	第百二十九號	第百三十號	第百四十一號	第百四十二號	第百四十三號	第百四十四號	第百四十五號	第百四十六號	第百四十七號	第百四十八號	第百四十九號	第百五十號	第百六十一號	第百六十二號	第百六十三號	第百六十四號	第百六十五號	第百六十六號	第百六十七號	第百六十八號	第百六十九號	第百七十號	第百八十一號	第百八十二號	第百八十三號	第百八十四號	第百八十五號	第百八十六號	第百八十七號	第百八十八號	第百八十九號	第百九十號	第百九十一號	第百九十二號	第百九十三號	第百九十四號	第百九十五號	第百九十六號	第百九十七號	第百九十八號	第百九十九號	第百一百號	<table> <tr><td>第百一十一號</td><td>第百一十二號</td><td>第百一十三號</td><td>第百一十四號</td><td>第百一十五號</td><td>第百一十六號</td><td>第百一十七號</td><td>第百一十八號</td><td>第百一十九號</td><td>第百二十號</td></tr> <tr><td>第百二十一號</td><td>第百二十二號</td><td>第百二十三號</td><td>第百二十四號</td><td>第百二十五號</td><td>第百二十六號</td><td>第百二十七號</td><td>第百二十八號</td><td>第百二十九號</td><td>第百三十號</td></tr> <tr><td>第百四十一號</td><td>第百四十二號</td><td>第百四十三號</td><td>第百四十四號</td><td>第百四十五號</td><td>第百四十六號</td><td>第百四十七號</td><td>第百四十八號</td><td>第百四十九號</td><td>第百五十號</td></tr> <tr><td>第百六十一號</td><td>第百六十二號</td><td>第百六十三號</td><td>第百六十四號</td><td>第百六十五號</td><td>第百六十六號</td><td>第百六十七號</td><td>第百六十八號</td><td>第百六十九號</td><td>第百七十號</td></tr> <tr><td>第百八十一號</td><td>第百八十二號</td><td>第百八十三號</td><td>第百八十四號</td><td>第百八十五號</td><td>第百八十六號</td><td>第百八十七號</td><td>第百八十八號</td><td>第百八十九號</td><td>第百九十號</td></tr> <tr><td>第百九十一號</td><td>第百九十二號</td><td>第百九十三號</td><td>第百九十四號</td><td>第百九十五號</td><td>第百九十六號</td><td>第百九十七號</td><td>第百九十八號</td><td>第百九十九號</td><td>第百一百號</td></tr> </table>	第百一十一號	第百一十二號	第百一十三號	第百一十四號	第百一十五號	第百一十六號	第百一十七號	第百一十八號	第百一十九號	第百二十號	第百二十一號	第百二十二號	第百二十三號	第百二十四號	第百二十五號	第百二十六號	第百二十七號	第百二十八號	第百二十九號	第百三十號	第百四十一號	第百四十二號	第百四十三號	第百四十四號	第百四十五號	第百四十六號	第百四十七號	第百四十八號	第百四十九號	第百五十號	第百六十一號	第百六十二號	第百六十三號	第百六十四號	第百六十五號	第百六十六號	第百六十七號	第百六十八號	第百六十九號	第百七十號	第百八十一號	第百八十二號	第百八十三號	第百八十四號	第百八十五號	第百八十六號	第百八十七號	第百八十八號	第百八十九號	第百九十號	第百九十一號	第百九十二號	第百九十三號	第百九十四號	第百九十五號	第百九十六號	第百九十七號	第百九十八號	第百九十九號	第百一百號
第百一十一號	第百一十二號	第百一十三號	第百一十四號	第百一十五號	第百一十六號	第百一十七號	第百一十八號	第百一十九號	第百二十號																																																																																																																
第百二十一號	第百二十二號	第百二十三號	第百二十四號	第百二十五號	第百二十六號	第百二十七號	第百二十八號	第百二十九號	第百三十號																																																																																																																
第百四十一號	第百四十二號	第百四十三號	第百四十四號	第百四十五號	第百四十六號	第百四十七號	第百四十八號	第百四十九號	第百五十號																																																																																																																
第百六十一號	第百六十二號	第百六十三號	第百六十四號	第百六十五號	第百六十六號	第百六十七號	第百六十八號	第百六十九號	第百七十號																																																																																																																
第百八十一號	第百八十二號	第百八十三號	第百八十四號	第百八十五號	第百八十六號	第百八十七號	第百八十八號	第百八十九號	第百九十號																																																																																																																
第百九十一號	第百九十二號	第百九十三號	第百九十四號	第百九十五號	第百九十六號	第百九十七號	第百九十八號	第百九十九號	第百一百號																																																																																																																
第百一十一號	第百一十二號	第百一十三號	第百一十四號	第百一十五號	第百一十六號	第百一十七號	第百一十八號	第百一十九號	第百二十號																																																																																																																
第百二十一號	第百二十二號	第百二十三號	第百二十四號	第百二十五號	第百二十六號	第百二十七號	第百二十八號	第百二十九號	第百三十號																																																																																																																
第百四十一號	第百四十二號	第百四十三號	第百四十四號	第百四十五號	第百四十六號	第百四十七號	第百四十八號	第百四十九號	第百五十號																																																																																																																
第百六十一號	第百六十二號	第百六十三號	第百六十四號	第百六十五號	第百六十六號	第百六十七號	第百六十八號	第百六十九號	第百七十號																																																																																																																
第百八十一號	第百八十二號	第百八十三號	第百八十四號	第百八十五號	第百八十六號	第百八十七號	第百八十八號	第百八十九號	第百九十號																																																																																																																
第百九十一號	第百九十二號	第百九十三號	第百九十四號	第百九十五號	第百九十六號	第百九十七號	第百九十八號	第百九十九號	第百一百號																																																																																																																
<table> <tr><td>家主鄭學忠</td><td>家主鄭仁永</td><td>家主金正一</td><td>家主金德三</td><td>家主金相服</td><td>家主金德一</td><td>家主崔益好</td><td>家主金杜根</td><td>家主金周水</td><td>家主朴斗一</td><td>家主金吉西</td></tr> <tr><td>草四間</td><td>草二間</td><td>草四間</td><td>草三間</td><td>草三間</td><td>瓦五間</td><td>草二間</td><td>草三間</td><td>草三間</td><td>草三間</td><td>草四間</td></tr> </table>	家主鄭學忠	家主鄭仁永	家主金正一	家主金德三	家主金相服	家主金德一	家主崔益好	家主金杜根	家主金周水	家主朴斗一	家主金吉西	草四間	草二間	草四間	草三間	草三間	瓦五間	草二間	草三間	草三間	草三間	草四間	<table> <tr><td>家主朴民昌</td><td>家主文在奎</td><td>家主金性承</td><td>家主金應承</td><td>家主丁敬文</td><td>家主文世玄</td><td>家主金相用</td><td>家主文世玄</td><td>家主文正述</td><td>家主金興用</td><td>家主文在旭</td></tr> <tr><td>草二間</td><td>草五間</td><td>草三間</td><td>草二間</td><td>草二間</td><td>草三間</td><td>草三間</td><td>瓦八間</td><td>草三間</td><td>草三間</td><td>草四間</td></tr> </table>	家主朴民昌	家主文在奎	家主金性承	家主金應承	家主丁敬文	家主文世玄	家主金相用	家主文世玄	家主文正述	家主金興用	家主文在旭	草二間	草五間	草三間	草二間	草二間	草三間	草三間	瓦八間	草三間	草三間	草四間																																																																												
家主鄭學忠	家主鄭仁永	家主金正一	家主金德三	家主金相服	家主金德一	家主崔益好	家主金杜根	家主金周水	家主朴斗一	家主金吉西																																																																																																															
草四間	草二間	草四間	草三間	草三間	瓦五間	草二間	草三間	草三間	草三間	草四間																																																																																																															
家主朴民昌	家主文在奎	家主金性承	家主金應承	家主丁敬文	家主文世玄	家主金相用	家主文世玄	家主文正述	家主金興用	家主文在旭																																																																																																															
草二間	草五間	草三間	草二間	草二間	草三間	草三間	瓦八間	草三間	草三間	草四間																																																																																																															
상서면 백길동	상서면 미동																																																																																																																								

<가호안>은 가옥 소유주만 파악함으로써 가옥을 빌려 사는 자, 즉 임차인은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호안>에서 임차인의 가옥은 누락됐는데, 선행 연구에서 <가호안>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도 실은 이런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기장 가호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 <기장 가호안>을 본격 분석하기에 앞서 1904년 당시 기장의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 입지와 읍세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2〉 기장현 지도(18세기)



<그림 2>는 18세기에 그린 기장현 지도이다.⁹⁾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기장은 북쪽에 울산, 서쪽에 양산, 남쪽에 동래와 인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바다와 접하고 있다. 동남쪽은 산지와 해안으로, 서북쪽은 산지와 구릉의 층적 평야로 이루어졌다. 읍세를 확인하기 위해 18~19세기 기장의 호구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廣輿圖』(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90-58).

〈표 1〉 18~19세기 기장의 호와 인구¹⁰⁾

(호/명)

시기	호수	인구수	호당 인구수	비고
1759년	3,064	11,581	3.8	여지도서
1789년	3,133	12,962	4.1	호구총수
1794년	3,143	12,982	4.1	군국총목
1832년	2,687	10,630	4.0	경상도읍지
1855년	2,726	10,256	3.8	기장현읍지
1871년	2,779	10,523	3.8	영남읍지
1899년	1,804	8,978	5.0	기장군읍지

<표 1>에서 보듯이 기장의 호구수는 18세기에는 3,064~3,143호/11,581~12,982명이었고, 19세기에는 1,804~2,779호/8,978~10,630명이었다. 18~19세기 사이에 호는 3,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인구도 11,000~12,000명대에서 9,000명대로 감소했다. 호당 구수는 18~19세기 3.8~4.1명을 보이지만 1899년에만 5.0명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이 흐르면서 호구수가 감소하는 모습이다.¹¹⁾ 그 결과 <기장 가호안> 작성 시기와 가장 근접한 1899년에 호구수는 1,804호 8,978명에 그쳤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다음 『고종실록(高宗實錄)』 기사에서 원인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기장 유생이 상소하여 계하받은 것을 보니, 고을과 백성들이 지탱하기 곤란한 정상을 상세히 진술하고 나

10) 윤용출, 앞의 논문, 81쪽 <표 1>과 이종봉, 「조선후기 機張縣의 面里制」, 『역사와 세계』 54, 2018, 335쪽 <표 3> 참조.

11) 18세기 말 이후 기장의 호구수와 호당 구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1899의 호당 구수는 5.0명으로 오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1871년에 비해 1899년 호가 35.1% 감소한 데 비해 인구는 14.7% 감소하는 데 그친 결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인구보다 호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독립호를 구성할 수 있는 자들이 줄어드는, 즉 주민의 경제력 취약성이 크게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 아뢰기를, ‘본현의 대동미 2,000석을 동래부의 예대로 매 석당 6냥씩 상정가(詳定價)로 쳐서 획부하고, 몇 년에 걸쳐 상납하게 한 동래운감(東萊運監)의 구폐미 70석은 영원히 없애고, 군사는 몇 년을 한정해서 몇백 명을 우선 완읍(完邑)으로 보내며 포흠한 환곡 9,700여 석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변통해 처리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기장현은 본래 바닷가의 영락한 고장으로 흉년과 전염병을 두루 겪어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토지가 황폐해졌습니다. 형편이 필경 위태롭고 지탱하기 어려워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니, 만약 조정에서 특별한 혜택을 베풀지 않는다면 갈수록 장차 고을은 고을 구실을 못하고 백성은 백성 구실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을 백성들이 호소하였다고 해서 갑자기 재결할 수는 없으니 위에서 진술한 여러 조목을 도신으로 하여금 편의 여부를 상의해서 의견을 갖추어 신속히 논계(論啓)하도록 하여 품처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¹²⁾

위 기사는 1887년에 의정부가 기장의 부세(賦稅)를 덜어 주는 사안에 대해 고종에게 아뢴 내용인데, 이 무렵 ‘영락한 고을’인 기장이 흉년과 전염병으로 인구와 토지가 더욱 감소하고 황폐화했음을 보여준다. <표 1>에서 1871~1899년 사이 호구수가 많이 감소한 데에는 흉년과 전염병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¹³⁾

18~19세기 사이 기장의 호구 규모는 어느 수준이었을까? 우선, 18세기에 작성한 『호구총수(戶口總數)』를 살펴보면, 호를 기준으로 기장은 경상도 71개 군현 중 49위였다. 인근 동래(7,007호/28,806명)는 18위, 울산(8,577호/32,382명)은 11위, 양산(2,179호/12,107명)은 62위여서

12) 『高宗實錄』 24권, 고종 24년 윤4월 14일.

13) 동래도 1871년에 7,662호 27,329명이었던 호구는 1895년에는 5,237호 20,35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당시 흉년과 전염병은 비단 기장만의 사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윤용출, 앞의 논문, 1989, 90~91쪽 <표 1> 참조).

14), 양산보다는 규모가 컸지만 동래, 울산에 비해서는 크게 열세였다. 한편, 기장의 전결수(田結數)는 영조 대 이후 시기결(時起結)이 1,700~1,800결에 머물렀다.¹⁵⁾ 그런데 이는 전결 크기에 따라 읍의 대소(大小)를 구분하는 기준¹⁶⁾에 따르면 ‘겨우 1,000결을 넘어서는’ 잔읍에 해당했다.¹⁷⁾ 이처럼 18~19세기 기장은 호구수나 전결수가 많지 않은, 앞의 『고종실록』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영락한 고을’로 표현할 정도로 읍세가 잔약한 잔읍이었다.

다음으로, 기장의 면리(面里) 구성을 살펴보자. 기장은 18세기~19세기 초까지 6~7면이었으나 19세기 중반부터는 8면으로 증가했다.¹⁸⁾ 면이 증가한 것은 18세기~19세기 사이 중북면이 분화해 상북면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면은 18세기 중반까지 중북면·하북면에서 이후로는 중북면·하북면·상북면으로 재편됐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은 중북면의 입지 조건과 상관있다. 기장 동남쪽은 산지와 해안인 데 비해 서북쪽은 산지도 있으나 구릉의 층적 평야도 다수 존재한다.¹⁹⁾ 이 때문에 서북쪽은 동남쪽보다 상대적으로 거주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고, 그만큼 인구도 많아서 분면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²⁰⁾ 실제로 서면이 중서면과 하서면으로, 북면이 상북면·중북면·하북면으로 분면(分面)

14) 『戶口總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602).

15) 윤용출, 앞의 논문, 81쪽, <표 1> 참조.

16) 『嶺南廳事例』에 따르면 6,000결 이상은 大邑, 4,000결 이상은 中邑, 2,000결 이상은 小邑, 1,000결 이상은 殘邑이라고 했다.

17) 윤용출, 앞의 논문, 80쪽.

18) 동래군과 비교해 보면, 동래군 관내 면은 1740년 7개, 1868년 9개, 1895년 9개, 1899년 8개, 1904년 12개였다(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68쪽 <표 1> 참조). 18세기 중반~19세기 말까지는 약 1면이 적었으나 <가호안> 작성 시에는 4면이 적어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기장군은 동래군보다 가옥 증가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 이종봉, 앞의 논문, 2018, 350~351쪽.

20) 상북면·하북면의 합산 전결수는 531여 결로 동면·남면 합산 398여 결을 크게 웃돈다. 상북면·중북면·하북면의 합산 호구수도 전체 8면의 39%를 차지했다(이종봉, 앞의 논문, 2018, 351쪽 <표 16> 참조).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표 2〉 18~19세기 기장의 면

시기	면	수	비고
1759년	읍내면·동면·남면·상서면·하서면·중북면	6	여지도서
1789년	읍내면·동면·남면·상서면·하서면·중북면 ·하북면	7	호구총수
18세기 중	읍내면·동면·남면·상서면·하서면·중북면 ·하북면	7	영남지도
19세기 초	읍내면·동면·남면·상서면·하서면·중북면 ·하북면	7	광여도
1871년	읍내면·동면·남면·상서면·하서면·상북면 ·중북면·하북면	8	영남읍지
1895년	읍내면·동면·남면·상서면·하서면·상북면 ·중북면·하북면	8	여재촬요
1899년	읍내면·동면·남면·상서면·하서면·상북면 ·중북면·하북면	8	기장군읍지
1904년	읍내면·동면·남면·상서면·하서면·상북면 ·중북면·하북면	8	기장군 가호안

<기장 가호안>을 작성한 1904년에도 기장은 8면을 유지했다. 19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8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8면에는 총 88동리가 속해 있었다. 상북면(15)>하북면·동면·상서면(12)>중북면·읍내면(11)>남면(8)>하서면(7) 순이었다. 한 면에 평균 11동리가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남면(8동리), 하서면(7동리)처럼 평균 이하인 면도 있었다.²¹⁾

이제, <기장 가호안>을 분석해 각 면에 가옥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었

21) 이종봉, 앞의 논문, 2018, 352~356쪽 참조. 참고로 동래군 12면에는 총 152 동리가 속해 있었다. 1면에 평균 13 동리가 속한 셈인데, 서상면, 서하면, 사중면, 동하면의 경우는 동리수가 10 동리 이하였다(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69쪽).

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 <기장 가호안>에 오른 면별 가옥수를 정리해 보았다.

〈표 3〉 1904년 면별 가옥수

(채)

면	가옥수	비고
읍내면	254(12.1%)	
동면	373(17.7%)	
남면	228(10.8%)	
상서면	220(10.4%)	
하서면	166(9.7%)	
상북면	269(12.8%)	
중북면	307(14.6%)	
하북면	283(13.4%)	
계	2,100(100%)	

[비고] 공해와 사찰(장안사)을 제외한 수치임

<표 3>에서 보듯이 <기장 가호안>에 오른 가옥은 모두 2,100채였다.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가옥을 제외하고 소유주가 거주하는 가옥만 2,100채였다. 그러니 실제로 기장에는 이보다 더 많은 가옥이 있었을 것이다.

면별로 가옥수를 살펴보면, 동면이 373채로 가장 많고, 이어 중북면(307채)>하북면(283채)>상북면(269채)>읍내면(254채)>남면(228채)>상서면(220채)>하서면(166채) 순이었다. 이렇듯 가옥은 동면·3북면(상북면·중북면·하북면)·읍내면에 많이 분포했고, 남면·상서면·하서면에는 상대적으로 덜했다.²²⁾

22) 참고로 18세기『호구총수』와 19세기『읍지』를 살펴보면 호가 읍내면, 동면, 상서면, 3북면(상북면·중북면·하북면)은 많았고, 남면과 하서면은 적었다. 상서면을 제외하면 <기장 가호안>의 면별 가옥수 순과 유사한 모습이다.

가옥수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므로 가옥의 상태(형태와 규모)와는 무관하다. 다시 말해 가옥의 좋고 나쁨, 크고 작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규모가 큰 와가가 반드시 가옥이 많은 면에 많은 것도, 반대로 가옥이 적은 면에 적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가옥수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업을 영위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 즉 행정·교통의 중심지이거나 경제 활동을 하기 좋은 곳이었음을 의미한다. 면별 인구수도 동면 1,363명, 상북면 1,127명, 하북면 1,276명, 읍내면 1,334명, 남면 470명, 상서면 1,507명, 하서면 667명이었다.²³⁾ 이렇듯 상서면을 제외하면 농경지가 많은 면에 인구와 가옥이 많았고, 그렇지 않은 면에는 적었다.²⁴⁾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체로 포구(浦口)가 있는 곳에 가옥이 많았다는 것이다. 1871년 기장에는 동면 3곳, 읍내면 2곳, 중북면 2곳, 상북면 1곳, 남면 1곳 등 총 9곳에 포구가 있었다.²⁵⁾ 이른바 ‘구포(九浦)’가 그곳이었다. 그런데 이 중 남면을 제외하고 동면, 읍내면, 중북면, 상북면에는 모두 가옥이 많았다.²⁶⁾ 이는 기장이 농경지가 적었던 탓에 농업 대비 어업의 비중이 높은 곳이어서 생업을 위해 포구에도 많은 호구가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²⁷⁾ 포구의 호구수는 <표 4>를 통해 대략 가늠할 수 있다.

23) 이종봉, 앞의 논문, 2018, 351쪽 <표 16> 참조.

24) 이러한 결과는 18세기 『호구총수』와 19세기 『읍지』의 면별 호수의 순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다. 즉, 전결이 많은 곳이 호도 많고, 호가 많은 곳이 전결도 많다. 이는 호가 전결, 즉 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25) 김동철, 『기장 효암리 전북바위와 관련 자료들』, 『향도부산』 47, 2024, 461쪽 <표 2> 참조.

26) 이 무렵 해안과 인접한 동래 동하면과 남하면도 가옥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이전까지 주거지로 선호하지 않았던 해안 인접지가 주거지로 부상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96~397쪽).

27) 참고로 1917년에도 기장의 호구는 해안을 끼고 있는 기장면, 일광면, 장안면이 내륙에 있는 정관면, 철마면보다 많았다.

〈표 4〉 1910년 기장의 어업호와 어업인구수

(호/명/척)

면	동리	호수	인구수	어업호수	어업인구수	선박수	비고
읍내면	선두포	101	720	66	365	16	
	두모포	115	435	35	78	15	
동면	동포동	69	255	14	51	6	
	향포	71	272	25	94	7	
	매포동	99	461	20	96	13	
남면	비옥포동	135	566	30	131	12	
상북면	화포동	166	744	112	508	29	
중북면	칠포	54	228	19	89	7	
	문포	119	622	33	156	12	
	월포	136	657	70	343	15	
계	계	1,065	4,960	424	1,911	132	

[전거] 『韓國水産誌』第2輯, 農商工部水産局, 1910.²⁸⁾

<표 4>는 <기장 가호안>보다 6년 늦은 1910년에 농상공부(農商工部) 수산물국(水産局)이 간행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에 실린 어업호와 어업인구수 통계이다. <기장 가호안>과는 시간 차가 있는 통계로 1904년 당시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으나 대략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에 따르면 포구가 있는 면은 앞서 언급했듯이 5면이었다. 어업호(漁業戶)는 모두 424호로 전체 1,065호의 39.8%를, 어업인구(漁業人口)는 1,911명으로 전체 4,960명의 38.5%를 차지했다. 특히,

인구수/면명		기장면	일광면	장안면	정관면	철마면	합계
조선인	호수(호)	1,245	821	1,085	724	669	4,544
	인구수(명)	6,557	4,673	6,152	3,971	3,974	25,327

(손숙경, 앞의 논문, 2016, 139쪽 주)8 <표 1> 재인용)

또 1926년 통계(간이국세조사표)를 보더라도 기장면(7,876명), 일광면(5,458명), 장안면(6,500명)이, 정관면(4,007명), 철마면(4,046명)보다 인구가 많았다.

28) 국립중앙도서관(G701:B-00109937422).

상북면은 어업호와 어업인구가 112호 508명으로 동면(同面) 전체 호구의 67.5%와 68.3%나 될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어업호와 어업인구가 기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899년 호구수와 비교해 볼 때 어업호는 23.4%, 어업인구는 20.6%를 차지한다. 비교 자료의 시간 차를 참작하더라도 대략 기장 호구수의 20%가량은 포구에 분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업이 기장 주민의 생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²⁹⁾

한편, 상서면은 당시 가장 많은 전결과 인구를 가졌음에도 가옥이 많지 않았다. 이는 <기장 가호안>의 가옥수가 행정·교통·경제 외에 다른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호안>의 가옥은 소유자가 있는 가옥으로 한정하므로 소유가 아닌 임차 가옥은 기재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행정·교통·경제 등 거주환경이 좋더라도 임차 가옥이 많다면 <가호안>에서 가옥수는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상서면은 우봉 김씨, 남평 문씨, 동래 정씨, 해주 오씨 등 유력 향반(鄕班) 가문들이 동성 촌락을 이루어 세거(世居)한 곳이었다.³⁰⁾ 양반들은 거주지로 해안가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 기장의 동쪽을 선호하지 않았다. 대신 산이 많지만, 장전천 좌우로 농경지가 발달한 상서면 일대로 모였다.³¹⁾ 이 향반 가문들은 이곳에 적지 않은 토지를 소유했는데, 미동 남평 문씨의 경우, 1909년 당시 30만 평에 이르는 방대한 임야를

29) 『民籍統計表』(1910년)에 따르면, 경상남도 21군(郡) 가운데 어업인구수를 기준으로 기장은 671명으로 4위(1위 용남, 2위 동래, 3위 창원, 5위 남해, 6위 울산)였다. 또 전체 인구에서 어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장이 3.3%로 1위였는데, 이는 용암 1.9%, 동래 1.1%, 창원 0.7%, 남해 1.4%, 울산 0.5%와 비교해 볼 때 꽤 높은 수준이다.

30) 손숙경·유현, 『조선 후기 기장 웅천의 남평 문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9, 10쪽; 박지현·손숙경, 앞의 책, 11쪽.

31) 손숙경·유현, 앞의 책, 11쪽.

소유했을 정도였다.³²⁾ 향반 가문들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노비(奴婢)·고공(雇工)이나 기구(寄口)·고용(雇傭) 등과 같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들이 상전(또는 주인)과 같은 가옥에 반드시 동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가옥을 소유하기도 했고, 상전(또는 주인) 가옥 또는 제3자의 가옥을 빌려 살기도 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가호안>에서 빠지게 된다. 상서면이 많은 전결과 인구에도 불구하고 <가호안>에서는 가옥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가옥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가호안>에 오른 220채보다는 훨씬 많은 가옥이 있었을 것이다.

이상, <가호안>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장에는 총 2,100채의 가옥이 있었다. 당시 동래에는 가옥이 4,867채였으므로 수치상으로 기장의 가옥 규모는 동래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이는 읍세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가옥은 동면·3북면(상북면·중북면·하북면)·읍내면이 많았고, 남면·상서면·하서면에는 적었다. 그런데 이는 동면·3북면(상북면·중북면·하북면)·읍내면이 다수의 전결과 포구를 갖춰 상대적으로 생업을 영위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전결과 인구는 많았으나 가옥이 적었던 상서면은 생업을 영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다. 따라서 유력 향반 가문에 의지한 임차인이 많아 비록 가옥수는 적게 집계됐으나 실제로는 가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1904년 당시 기장의 가옥은 동면, 3북면(상북면·중북면·하북면), 읍내면, 상서면처럼 농업과 어업에 유리한 곳에 주로 분포했고, 남면과 하서면은 동래와 인접했으나 상대적으로 가옥이 덜 많았다.

32) 이훈상, 『19세기 기장군 미동의 남평 문씨 향반 가문의 경제 기반과 한말 식민지기 새로운 경제활동』,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29쪽.

Ⅲ. 가옥 소유주

<가호안>에 등재된 대지는 모두 2,100필지였다.³³⁾ 이 중 1,979필지는 개인이, 나머지 121필지는 안평역·신명역, 동리, 문중 등이 소유하거나 학위전·마위전·덕동서숙전이었다. 1,979필지의 대지를 소유한 자, 즉 대주(垔主)는 1,915명이었다. 대주 1,915명 중 48명(동면 4명, 남면 2명, 상서면 5명, 하서면 3명, 상북면 29명, 중북면 2명, 하북면 3명)은 2필지 이상 대지를 소유했다. 이 48명 중에서도 남면 윤봉리의 김원재는 7필지, 정무희는 4필지, 상북면 대룡동의 김개화도 4필지를 소유했다. 상서면 석길동의 문석노, 상북면 장안동의 박춘매, 상북면 기룡동의 정맹복, 김갑순, 이영매, 안명여, 한연단은 각각 3필지를 소유했다.

〈표 5〉 대지수와 대주수

(필지/명)

면	대지수	대주수	비고
읍내면	254	252	
동면	373	369	
남면	228	176	
상서면	220	214	
하서면	166	102	
상북면	269	232	
중북면	307	304	
하북면	283	266	
계	2,100	1,915	

[비고] 공해와 사찰(장안사)을 제외한 수치임

대지수는 가옥수와 동일했다. 이는 대지 1필지에 가옥 1채만 들어선 결과로, 당시 일반적인 모습이었다.³⁴⁾ 대지 1필지가 어느 정도의 규모

33) 공해가 들어선 51필지는 제외한 수치임.

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래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지 1필지에 가옥 1채만 들어선 예가 있는가 하면 58채가 들어선 예도 있고, 가옥 규모도 적게는 2칸에서 많게는 17칸까지 다양했던 만큼 대지 1필지의 규모는 서로 달랐다.³⁵⁾

〈표 6〉 가옥수와 소유자수

(채)

면	가옥수	소유구분		비고
		가대주 가옥	가주 가옥	
읍내면	254	254	-	2채는 동리 소유
동면	373	368	5	
남면	228	176	52	
상서면	220	214	6	
하서면	166	100	66	
상북면	269	232	37	
중북면	307	307	-	1채는 덕동서숙 소유
하북면	283	269	14	
계	2,100(100%)	1,920(91.4%)	180(8.6%)	

[비고] 공해와 사찰(장안사)을 제외한 수치임

<가호안>에 오른 가옥은 총 2,100채였다. 이 중 자신 소유 대지에 들어선 가옥을 소유한 자(家堡主)의 가옥은 1,920채, 타인 소유 대지 위에 들어선 가옥을 소유한 자(家主)의 가옥은 180채였다. 가대주 가옥과 가주 가옥의 비율은 91.4%:8.6%로 가대주 가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시 기장의 가옥 소유주들은 대다수가 자신 소유 대지에 가옥을 지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비단 기장만의 모습은 아니었다. 동래도 77.0%:23.0%로 가대주 가옥이 많았지만 기장만큼 비율이 높지는 않았

34) 동래군도 대체로 기장군과 같은 모습을 보였으나, 대지 1필지에 여러 채의 가옥이 들어선 예도 있어 기장과 차이를 보였다(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81~386쪽).

35) 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82쪽.

다.³⁶⁾ 동래의 경우, 넓은 대지를 소유한 자가 많다 보니 하나의 대지 위에 들어선 가옥도 많았던 만큼 가주 가옥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장의 대주가 소유한 대지 면적이 동래의 대주가 소유한 그것보다 작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장 주민의 경제력이 동래 주민의 그것보다 열세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주 가옥이 많은 면은 하서면·남면·상북면·하북면이었다. 하서면의 경우, 하월촌 가옥 56채 중 53채가 마위전·학위전 위에, 부명리 가옥 7채 중 6채가 마위전 위에, 두전리 가옥 12채 중 6채, 임곡리 가옥 14채 중 1채도 개인 대주의 대지 위에 각각 들어섰다. 남면의 경우, 안평리 가옥 43채가 모두 신명역 소유 대지 위에, 운봉리 가옥 15채 중 9채도 개인 대주의 대지 위에 들어섰다. 상북면의 경우, 대룡동, 장안동, 기룡동, 용소동에 대주의 대지 위에 선 가옥이 많았다. 하북면의 경우도 가동 17채 중 3채가 안평역 소유 대지 위에, 하평전리 19채 중 11채도 신명역 소유 대지 위에 들어선 것이었다. 이렇듯 가주 가옥 180채 중 116채는 마위전·학위전이나 신명역·안평역 소유 대지에 들어선 가옥이었다.

<표 7> 1910년 호구수

(호/명)

면	호수	인구수		호당구수	비고
		남	여		
읍내면	678	3,451		5.1	
		1,748	1,703		
동면	558	2,829		5.1	
		1,491	1,338		
남면	276	1,478		5.4	
		752	726		
상서면	540	2,642		4.9	
		1,420	1,222		

36) 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89쪽 <표 7>.

하서면	282	1,366		4.8	
		723	643		
상북면	531	2,522		4.7	
		1,306	1,216		
중북면	620	3,210		5.2	
		1,656	1,554		
하북면	514	2,556		5.0	
		1,353	1,203		
계	3,999	20,054		5.0	
		10,449	9,605		

[전자] 『民籍統計表』, 内部警務局, 1910.³⁷⁾

이상과 같이 <가호안>에 오른 가옥은 2,100채였으며, 이 가옥들의 소유주는 대부분 대지와 가옥을 모두 소유한 가대주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여기에는 임차인이 거주했던 가옥은 빠져 있다. 따라서 1904년 당시 기장에 있었던 가옥은 <가호안>에 오른 2,100채보다 많았을 것이 분명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그 수는 알 수 없다. 다만, 1910년에 작성한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와 비교해 보면 대략 추정은 가능하다. 『민적통계표』 상의 통계치는 이전 호구 자료의 통계치보다 실상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에 따르면 1910년 기장의 호구수는 3,999호, 20,054명으로 호당 구수는 5.0명이었다. 『민적통계표』 상의 호는 구호적(舊戶籍) 상의 호와 달리 자연가(自然家)이므로, 1910년 당시 기장의 가옥은 3,999채였다. <가호안>에 오른 가옥 2,100채와 비교해 1,899채가 더 많다. <가호안>과 『민적통계표』는 6년의 시간차를 두고 작성했다. 따라서 1904년 당시 기장에 2,100채 외에 1,899채의 임차인 가옥이 더 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대 1,899채, 또는 그 이하 규모의 가옥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7) 국립중앙도서관(동귀朝37-35).

Ⅳ. 가옥 형태와 규모

<가호안>에 오른 가옥 2,100채 중 2,093채는 초가(草家)였다. 전체 가옥 중 초가의 비율은 99.7%에 달했다. 이는 비단 기장만의 사정은 아니었다. 동래도 전체 가옥 4,867채 중 4,787채가 초가였다.³⁸⁾ 초가 2,093채를 제외한 나머지 7채는 와가(瓦家)였는데, 이는 전체 가옥의 0.34%였다. 동래도 80채가 와가였는데, 이는 전체 가옥의 1.7% 수준이었다.³⁹⁾ 기장이나 동래나 당시 일반적인 가옥의 모습은 초가였다.

〈표 7〉 가옥 형태

면	가옥수(채)	가옥 형태(채)	
		초가	와가
읍내면	254	254	-
동면	373	372	1
남면	228	228	-
상서면	220	215	5
하서면	166	166	-
상북면	269	269	-
중북면	307	307	-
하북면	283	282	1
계	2,100	2,093	7

[비고] 공해와 사찰(장안사)을 제외한 수치임

와가는 동면과 하북면에 각 1채(총 2채), 상서면에 5채, 총 7채가 있었다. 동래의 경우 와가는 전통적 주거지이거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주거지인 읍내면·동평면·사중면·남상면에 많았다.⁴⁰⁾ 이에 비해 기장은 유력 향반 가문이 동성촌락(同姓村落)을 이루어 세거하는 상서면에 집중

38) 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90~395쪽.

39) 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90~395쪽.

40) 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93쪽.

됐다.

극히 드물었던 와가를 소유한 자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은 동면 화전동의 안운조, 상서면 미동의 문세현, 백길동의 김덕일과 김치일, 와여동의 오원재와 오운중, 하북면 대전동의 김순금이었다. 이처럼 와가는 상서면에 많았는데, 상서면은 일찍부터 기장의 유력 향반 가문인 남평 문씨, 우봉 김씨, 동래 정씨, 해주 오씨, 김해 김씨 등이 자리 잡고 동성 촌락을 형성하면서 상호 통혼권을 구축한 곳이었다.⁴¹⁾ 이러한 사정은 당시 기장에서도 경제력을 갖춘 일부 유력 향반 가문을 제외하고는 와가를 소유하기 쉽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옥 형태별로 소유주를 비교해 보자. 초가는 가대주가 1,913채를, 가주가 180채를 소유했다(<표 8>). 이에 비해 와가는 가대주가 7채를 소유했을 뿐 가주는 소유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와가를 소유했던 안운조 등 7명이 바로 그 가대주였다. 그럼, 당시 기장의 가대주는 가주보다 경제적으로 우세했던 것일까? 가대주만 와가를 소유했다는 점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동래처럼 가주 중 와가를 소유하거나 7칸 이상 가옥을 소유한 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옥 규모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²⁾

〈표 8〉 가옥 형태별 소유 구분

면	가옥수(채)	초가(채)		와가(채)	
		가대주 소유	가주 소유	가대주 소유	가주 소유
읍내면	254	254	-	-	-
동면	373	367	5	1	
남면	228	176	52	-	-
상서면	220	209	6	5	
하서면	166	100	66	-	-

41) 이훈상, 앞의 책, 12쪽.

42) 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91~395쪽 참조.

상북면	269	232	37	-	-
중북면	307	307	-	-	-
하북면	283	268	14	1	
계	2,100	1,913	180	7	-

[비고] 공해와 사찰(장안사)을 제외한 수치임

〈표 9〉 가옥 규모

면	가옥 규모(칸)								계
	2	3	4	5	6	7	8	13	
읍내면	55	152	35	9	-	3	-	-	254
동면	139	189	36	8	-	-	-	1	373
남면	63	120	40	4	1	-	-	-	228
상서면	61	119	31	8	-	-	1	-	220
하서면	54	77	35	-	-	-	-	-	166
상북면	157	95	17	-	-	-	-	-	269
중북면	125	153	28	-	1	-	-	-	307
하북면	87	156	40	-	-	-	-	-	283
계	741	1,061	262	29	2	3	1	1	2,100

[비고] 공해와 사찰(장안사)을 제외한 수치임

기장의 가옥 2,100채 중 2,093채는 초가, 7채는 와가였다. 초가 2,093채는 2칸 741채, 3칸 1,061채, 4칸 259채, 5칸 27채, 6칸 2채, 7칸 3채로 구성됐다(<표 9>). 2칸에서 7칸까지 규모가 다양했으나 2~4칸이 대다수였다. 이 중에서도 3칸은 50.7%로 절반 이상이였다. 와가 7채 중 3칸 이하는 없었고, 4칸 3채⁴³⁾, 5칸 2채⁴⁴⁾, 8칸 1채⁴⁵⁾, 13칸 1채⁴⁶⁾였다. 동래도 기장과 사정이 비슷해 3칸 초가가 가장 많았다.⁴⁷⁾ 당시 기장과 동래의 일반적 가옥 형태와 규모가 초가 3칸이었음을 알 수 있다. 4칸 이

43) 상서면 와여동 오원재와 오윤중, 하북면 대전동 김순금의 가옥이다.

44) 상서면 백길동 김덕일과 김치일의 가옥이다.

45) 상서면 미동 문세현의 가옥이다.

46) 동면 화전동 안윤조의 가옥이다.

47) 장경준, 앞의 논문, 2022, 391~395쪽 참조.

하는 가대주와 가주의 가옥, 5칸 이상은 오직 가대주의 가옥뿐이었다. 즉, 가주 가옥은 최대 4칸에 그쳤고, 5칸 이상은 없었다. 이렇듯 와가의 소유 여부, 가옥의 규모 등을 볼 때 기장의 가대주는 가주보다 경제 사정이 좋은 편이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가옥이 많았던 동면, 3북면(상북면·중북면·하북면), 읍내면 중 3북면의 가옥 규모이다. 3북면의 가옥은 중북면의 6칸 추가 1채⁴⁸⁾와 하북면 4칸 추가 1채⁴⁹⁾를 제외하면 모두 4칸 이하 추가였다. 가옥수는 많았지만, 규모가 큰 가옥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이 3북면이 다른 면에 비해 소농(小農)의 거주율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904년 작성한 <가호안>을 분석해 기장의 가옥 분포와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4년 기장은 8면, 88동리로 구성됐다. 당시 가옥은 총 2,100채가 있었는데, 이 중 많은 수가 동면·3북면(상북면·중북면·하북면)·읍내면에 있었다. 이 면들은 행정·교통의 중심지이거나, 농경지가 발달하고 포구도 형성돼 생계를 꾸리기에 유리한 곳이었다. 반면, 상서면·하서면·남면은 비교적 가옥수가 적었는데, 이는 농경지와 인구가 적었던 탓도 있으나 <가호안>이 소유 가옥만 올리고 그 외 가옥은 빠뜨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력 향반 가문의 동성촌락이 형성된 상서면이 이런 대표적 사례였다.

48) 중북면 좌동 이막검의 추가이다.

49) 하북면 대전동 김순금의 추가이다.

가옥은 가대주 가옥과 가주 가옥으로 구분됐다. 이중 가대주 가옥은 1,920채, 가주 가옥은 180채로, 가대주 가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가대주 소유 대지는 크지 않아 동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대지 위에 복수의 가옥이 선 경우는 없었다. 전체 2,100채 가옥 중 2,093채는 초가, 나머지 7채는 와가였다. 기장도 당시 다른 지역처럼 주된 가옥 형태는 초가였다. 와가는 동면과 하북면에 각 1채(총 2채), 상서면에 5채가 있어 상서면에 많았다. 상서면은 일찍부터 기장의 유력 향반 가문인 남평 문씨, 우봉 김씨, 동래 정씨, 해주 오씨, 김해 김씨 등이 자리 잡고 동성 촌락을 형성하면서 상호 통혼권(通婚圈)을 구축한 곳이었다. 초가 중 1,913채는 가대주, 180채는 가주의 가옥이었다. 이에 비해 와가 7채는 모두 가대주 가옥이었다. 초가는 2칸에서 7칸까지 규모가 다양했으나 2~4칸이 대다수였다. 이 중에서도 3칸은 50.7%로 절반 이상이었다. 와가 7채 중 3칸 이하는 없었고, 4~13칸까지 규모가 나뉘었다.

인근 동래와 비교할 때, 기장의 읍세는 열세였다. 1899년 동래의 호구는 6,728호, 27,275명으로, 기장은 호는 3.7배, 인구는 2.9배가 적었다. 1910년도 동래의 호구는 13,960호, 69,460명으로, 기장은 호와 인구가 모두 3.5배나 적었다. 소속 면의 수도 동래는 12면, 기장은 8명으로 동래보다 4면이 적었다. 대지의 규모도 동래는 한 필지에 여러 채의 가옥이 들어선 예가 있었던 데 비해 기장은 그런 예가 없어 규모가 큰 대지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기장과 동래 모두 3칸 규모의 초가가 대부분이었고, 가대주 가옥이 가주 가옥보다 많았다는 점은 같았다. 또 기장과 동래 모두 포구가 있는 해안가에 가옥이 많았다는 것도 동일하다. 1876년 부산이 개항하면서 포구를 통한 물자의 이동이 증가하고 어업도 점차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포구가 있는 해안가는 생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인식되면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며 새로운 주거지로 부상하며 지역의 가옥 분포 상을 변화시켜 나갔다.

| 참고문헌 |

1. 자료

『慶尙南道東萊郡家戶案』

『高宗實錄』

『광여도』

『機張郡邑誌』

『民籍統計表』

『韓國水産誌』第2輯

2. 저서 및 논문

기장문화원, 『기장의 역사와 문화』, 신서원, 1998.

김동철, 「18세기 후반~20세기 전반 기장 지역의 시장권」,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2010.

_____, 「기장 효암리 전복바위와 관련 자료들」, 『항도부산』 47, 2024.

김숙경, 「『남천일록』을 통해 본 심노승과 기장의 유배인」, 『지역과 역사』 54, 2024.

김혜리, 「조선후기 기장현감의 재임양상과 그 의미」, 『역사와 세계』 64, 2023.

구산우, 「부산 기장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 『항도부산』 47, 2024.

박지현·손숙경, 『조선후기 기장 백길의 우봉 김씨 향반 가문과 고문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3,

변광석, 「임진왜란 직후 기장지역의 상황과 피로인 사기장」, 『한국민족문화』 33, 2009.

손숙경·유현, 『조선후기 기장 웅천의 남평 문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9,

신세완, 「1801~1806년 심노승의 유배 생활에서 奴僕의 역할」, 『지역과 역사』 54, 2024.

손숙경, 「주변부에서 배후지로-기장의 역사와 문화, 무엇을 문제 삼고 어떻게 연구 할 것인가?」, 『동양한문학연구』 44, 2016.

이기봉, 「『남천일록』과 기장현의 유배행정」, 『지역과 역사』 54, 2024.

이종봉,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33, 2009.

_____, 「조선후기 機張縣의 面里制」, 『역사와 세계』 54, 2018.

- 이훈상, 『19세기 기장군 미동의 남평 문씨 향반 가문의 경제 기반과 한말 식민지기 새로운 경제활동』,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7.
- 윤용출, 「18세기 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 『한국문화연구』 2, 1989.
- _____, 「조선후기 機張縣의 三政 운영」, 『한국민족문화』 8, 1996.
- 여민주, 「유배생활 속 공부와 소통-『남천일록』을 통해 본 유배인과 지역민의 교류」, 『지역과 역사』 54, 2024.
-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호’의 성격-경상도 지역 사례」,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대한제국기 경상남도 동래군의 주거지 분포와 가옥 소유 현황-1904년 <경상남도 동래군 가호안>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향도부산』 43, 2022.
- 정용숙, 「신라·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정비와 기장」, 『한국민족문화』 8, 1996.
- 최영준, 「『家戶案』 분석을 통해 본 개화기 경상남도의 가옥 형태와 구조」, 『대한지리학회지』 39-3, 2004.
- 홍영의, 「부산지역 고려 유적 출토 명문 기와의 성격」, 『향도부산』 47, 2024.

투고일 : 2024. 09. 30. 심사완료일 : 2024. 10. 29. 게재확정일 : 2024. 11. 22.
--

| Abstract |

Distribution and Size of Houses in Gijang-gun,
Gyeongsangnam-do during the Korean Empire
-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Gahoan, Gijang-gun,
Gyeongsangnam-do in 1904

Jang, Kyung-Jun

In 1904,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Gijang (機張) consisted of eight myeon and 88 dongri. There were a total of 2,100 houses, many of which were distributed in Dongmyeon, three Buk-myeon (Bukbuk-myeon, Jungbuk-myeon, and Habuk-myeon), and Eupnae-myeon. Examining the shape and distribution of houses, houses were divided into 1,920 houses that owned both land and houses, and 180 houses that owned only houses. Out of 2,100 houses, 2,093 were thatched and 7 were tiled. Tiled houses were mainly concentrated in Sangseo-myeon, where influential noble families located and formed the Dongseong Village.

Compared to nearby Dongnae, Gijang's town tax was poor. In 1899, Dongnae had 6,728, 27,275, which was 3.7 times less for Gijang and 2.9 times less for the population. In 1910, Dongnae had 13,960, 69,460 people, and Gijang had 3.5 times less both Gijang and the population. Dongnae, the capital of his hometown, had 12 Myeon and Gijang with eight people, which was four fewer than Dongnae. In terms of land size, Dongnae had several houses on one lot, while Gijang had relatively few large landlords because such cases were never seen. However, most of the three-bedroom thatched houses were located in Gijang and Dongnae, and Gadaeju houses outnumbered Gaju houses. It was similar that there were many houses along

the coast.

Key Words: Gahoan, land, house, land owner, house owner, thatched house, tiled house.